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3.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안 제2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 지원 사업(안 제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빌의 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 “친환경 소재”의 정의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에 정의를 참고 하여 규정하였고,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한 것은 친환경 소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봄.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
  - 안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제1항은 공공기관인 영등포구부터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제2항 및 제3항은 현수막 지정계 시대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권고를 통해民間에게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 막의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검토 결과
  - 환경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던 2024년 상반기, 지자체가 수거해 처리한 폐현수막만 2,574톤에 달하며,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은 30% 수준에 그침. 해당 현수막의 제작·폐기로 최소 9,345톤의 온실가스 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서울에서 연간 약 7,600가구가 사용 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함.
  - 한편,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제작되며, 현수막을 소각 시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및 온실가스 등을 다 량 배출시키며, 매립 시에는 자연분해까지 최소 50여 년이 소요되는 등 일반 현수막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러한 폐현수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지자체 및 민관협의체 대상)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23년 12월 파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5개의 자치구를 비롯하여 총 63개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영등포구 현수막 지정계시대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현수막 지정계시대 12개소가 추가 설치됨에 따라 폐현수막의 증가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 또한 현수막 지정계시대에서 발생한 현수막은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도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9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 의 자: 이성수, 최인순, 유승용

정선희 의원 (4인)

### 1. 제안이유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하여, 기후위기에 대  
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안 제2조)
- 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안 제4조)
- 다. 지원 사업(안 제5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 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

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